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에 대한 지방소비세는 다음달 20일(‘26.2.20.)부터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

I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최초로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71조(납입) ① · ② (생 략)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 · 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에 따른 시 · 군 조정교부금(세종특별</p>	<p>제71조(납입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.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